

전기제품 PL 사례

이온수기 화재로 인한 가구 등의 피해 배상 요구 건

1. 사건개요

청구인은 '89. 11 중순경 피청구인이 제조한 석유팬히터를 구입하여 집의 거실에 설치하여 사용함. 약 1년이 지나 청구인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 혼자서 팬히터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팬히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APT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음.

2.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품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입은 피해이므로 전소도니 주택내부의 시설 및 가재도구 등의 피해 금 30,0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화재는 제품의 하자 때문이 아니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함.

3. 조정결정

당사자간의 합의로 피청구인이 금 8,05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베란다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부터의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

1. 상담내용

5월7일 12시경 쇼핑에서 돌아오자 타는 냄새가 나고 창문에서 연기가 보임. 베란다(임대아파트 1층)를 확인하자 건조시키고 있던 이불, 담요, 망사창 등이 타고 있어, 작년 8월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부터의 불꽃이 2층의 베란다까지 올라가고 있었음. 소화기를 5~6개 사용하였으나 끌 수 없어 소방서에 통보함. 피해는 벽,

베란다 등이 크게 그을리고, 유리창문도 금이 감. 에어컨 외에는 BS안테나가 타고 세탁물이 소화기 및 물로 인해 못쓰게 되었음. 경찰성서는 방화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 소방서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말하고 있음. 실외기는 소방서의 현장검증 후에 제조사가 원인검증을 위해 가지고 감. 에어컨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므로 보상을 요구함. 소비자센터로부터 소개받음.

2. 경위

당 센터는 상담자로부터의 요망이 있어, 제조사를 동행해 사고일로부터 5일후 현장에 가 당시의 상황확인과 아울러 소방서를 방문함. 현장은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였으나, 벽과 베란다 등에 불에 탄 흔적이 크게 남아 있었음. 소방서에서는 당시 7m이 바람이 불어 그 영향으로 연소가 빨랐으나, 담배(상담자는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는데, 재떨이에는 물을 넣고 에어컨과 약4m 떨어진 반대편에 설치해 9시경에 피웠다고 함) 및 방화의 가능성이 없어(주위에 엄마와 동행한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음) 원인불명이라는 것이었음. 당일 에어컨은 리모콘으로 전원을 꺼 놓은 상태로 전류차단장치(Breaker) 및 전용콘센트는 측정결과 정상이었음. 제조사가 지참한 실외기의 사진에서는 수지부는 대부분 불타버리고, 기판은 상당히 소실되어 있었음. 제조사의 원인조사결과를 가지고 당 센터가 조정을 행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양해를 받음. 조사결과는 소비생활센터, 당 센터, 보험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상담자에게 제조사가 설명하였음.

3. 원인

제조사의 조사결과 실외기의 수지 및 콘트롤 박스는 소손이 심했으나, 전기부품, 배선류, 접점 등의 잔존물로부터는 溶痕 및 溶着 등의 발화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음. 또한 상정되는 요인을 가정해 동일모델 여러 대를 사용해 테스트하였으나 재현하지 못함. 외부로부터의 불에 의한 강제연소 테스트에서는 사고제품에 가까운 소손상태가 되었으나, 사고제품이 외부로부터의 연소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함에 따라 실외기로부터의 발화는 특정할 수 없었음. 당 센터는 제조사의 조사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4. 결과

상담자는 이 이상의 원인조사는 곤란하다고 생각함. 당 센터에서 보험회사에 수속상황을 확인한 바, 아파트 복구비 및 家財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의해 전액 지불됨. 사고직후 상담자는 제조사에 移徙신청을 행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려 회답이 지연되고 있던 것으로 판명됨.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당 센터 고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알선안을 제시하고 쌍방의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제조사는 상담자에게 해결금을 지불하고 본건을 종료함.